보은군 공고 제2025-1403호

- 청년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4분기)

관내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3일

보 은 군 수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지역 내 청년 소상공인 가계 운영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자립기반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

＊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자체 인증업소의 경우, 가점 부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11. 4.(화) ~ 11. 21.(금) 18:00까지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소상공인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청년

＊ 청년 연령 기준(「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 18세 ~ 45세

②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청년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은 점포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하며, 전대차 계약은 점포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

③ 직전연도 국세, 지방세 전체 납부세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상공인 * 신청자 본인에 한함

○ **(지원규모)** 관내 청년 소상공인 **점포 00개소**

○ **(지원내용)** 2025년 10월 이후 납부한 점포 임차료(월세) 일부 지원

①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료 지원

지급예시) 2025. 1월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한 대상자가 사업 선정 시(4월 예정)까지 정상 영업한 경우, 최초 지원금은 2025. 1/4 분기(1~3월) 3개월분임

☞ 300,000원 x 1/4분기분(3개월) = 900,000원

* 임차료(월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임차료 지원

② 최대 1년간 지원

③ 분기별로 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지급(1분기 지급 : 4.30.까지, 2분기 지급 : 7.31.까지, 3분기 지급 : 10.31.까지, 4분기 지급 : 12.15.까지)

* 분기별로 월세 지급 증빙 제출

* 분기별 월세 지급 증빙 미제출 시 임대차계약 종료로 간주하여 지원 종료

○ **(제외대상)**

① 휴·폐업 신고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인 업체

③ 금융·보험업 및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으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 참고)

④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업종으로 지원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⑥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점포를 계약한 자

⑦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신청대상)** 신청자 본인

○ **(신청기간)** 2025. 11. 4.(화) ~ 11. 2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사업 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신청문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접 수 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청년 지원사업 담당자

- ☎. 043-540-3708

-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상 착오, 허위, 누락 등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구분	신청서류	비고(서류발급처)
필수	**신청서** 1부	공고문 붙임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	공고문 붙임
필수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2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혼자의 경우, 부부 각각 제출	읍·면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필수	**점포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은 점포 소유주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하며, 전대차 계약은 점포 소유주가 동의한 경우만 인정	신청인 ※군청: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관할 등기소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
필수	**임차료(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 2025년 10월 이후 납부내역	신청인
필수	(2024년도 전체) **국세(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및 지방세(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 납부 증빙 서류** 각 1부 ※ 신청인 본인에 한함	관할 세무서 관할 시군구청
필수	**통장사본**	신청인
해당 시	**물가안정 인증업소 등 인증서 사본**	신청인
	가업승계 업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점포),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신청인
	컨설팅 또는 교육 등 창업프로그램 이수증	신청인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대상자 선정

○ **(선정일정)** 2025. 12. 2.(화)까지

○ **(선정절차)**

- 서류검토 :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 검토
- 선정평가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붙임 참고)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신청접수가 사업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 충족여부(서류검토 결과)만으로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 **(결과통보)**

- 통보일정 : 2025. 12. 3.(수)까지
- 방　　법 : 유선(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정자 개별 통보

4.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 **(지급일정)** 분기별 지급

분기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급일	4. 30.까지	7. 31.까지	10. 31.까지	12. 15.까지

＊ 2025년 1분기 선정대상자의 경우, 2025년 1월 이후 납부한 점포 임차료에 대해 지원하며, 최초 지원금은 최대 3개월(1~3월)분임

＊ 12월 월세 납입분은 다음연도 4월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개인계좌 입금

※ 지원금의 환수

❶ 지원기간 중 3개월 이상 휴·폐업하거나 ❷ 보은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❸ 지원대상자가 보은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 지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상실 사유 발생 이후 기간에 지원된 지원금 환수

▢ 사업추진일정

신청·접수(11월)		대상자 선정 및 통보(12월)		지원금 지급(12월)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 준비	⇨	· 제출서류 적격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SMS전송)	⇨	· 분기별 월세 지급 증빙 제출 · 지원금 지급
신청인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5. 기타 사항

▢ 일반사항

○ 신청요건은 공고일 전까지 충족되어야 함

○ 보은군은 필요할 경우, 신청단체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신청서류 준비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보은군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고사항은 보은군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사업 관련 사항

○ 부적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지원금의 환수,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자 수가 지원 대상자 수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검토를 통해 지원 적격자가 지원 대상자 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3. 우선순위 평가표 1부.

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1부.

붙임 1 **신청서(식)**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상 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운영기간	년 개월	종업원 수	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면적 : ㎡)		

사업장 현황	임차현황					
	임차보증금	월세	임차면적	계약일자	임차기간	전대차 여부
	백만원	만원	㎡		-	
	인증현황 등					
	☐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격업소 등) 및 지자체 인증업소 여부					
	☐ 가업승계업소					
	☐ 컨설팅 또는 교육 등 창업프로그램 이수 여부					

지원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위와 같이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본인은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거주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각각 발급 5.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임차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료 입금 내역 등) * 제출기준 : 2025년 10월 이후 납부내역 9. 국세(납부내역증명) 및 지방세(납부확인서) 납부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자 본인만 해당 10.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11. **(해당 시)** 기타 가점 서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은군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점포 임차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사업자등록정보, 임차보증금 포함)·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 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유의사항	확인 (✓ 체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보은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허가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세대주)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붙임 3 **우선순위 평가표**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우선순위 평가표

심 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순번	심사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점수
1	국세 및 지방세 총 납부세액 * 직전연도 기준 * 신청자에 한함	가. 25만원 미만	30	
		나.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	
		다.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15	
		라.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10	
		마.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5	
2	관내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	가. 6개월 미만	20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	
		다. 1년 이상 2년 미만	15	
		라. 2년 이상 3년 미만	10	
		마. 3년 이상	5	
3	사업장 운영기간 *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	가. 6개월 미만	20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15	
		다. 1년 이상 2년 미만	10	
		라. 2년 이상 3년 미만	5	
4	임차료	가. 100만원 미만	30	
		나.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25	
		다.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	
		라.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5	
		마. 250만원 이상	10	
가점사항		물가안정 등 지자체 인증업소	5	
		가업승계 업소	5	
		창업프로그램 이수	5	
총 점				

※ 동점자 발생 시 납부세액 적은 순 → 관내 거주기간이 짧은 순 → 사업장 운영기간 짧은 순 → 임차료 적은 순으로 선정

붙임 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이차보전 및 경영개선 보조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 (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